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고 동 수

2006. 3.

• 차례 •

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개념	1
1. CSR 개념의 구분	1
2.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3
II. CSR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5
1. 정부간 국제기구의 규범화 동향	5
(1) UN	5
(2) OECD	8
2. 비정부간 기구의 논의 동향	10
(1) 코 원탁회의(CRT)	10
(2) 국제투명성기구(TI)	10
(3) NGO 활동 사례	12
(4) 기타 활동	13
3. ISO의 국제표준화 동향	15
(1) 표준화 추진 배경 및 경위	15
(2) 제1차 ISO/TMB/WG SR 회의	17
(3) ISO SR 표준(ISO 26000)의 영향 및 향후 일정	23
4. 주요 국가별 CSR 대응 동향	25
(1) 미국	25
(2) EU	30
(3) 아시아	38
5. 다국적기업의 CSR 대응 사례	39
(1) 자사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CSR 전파	39
(2) 일본 NEC의 CSR 추진 사례	40

Ⅲ. 우리 정부 및 기업의 CSR 대응방안	43
1. CSR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일반론)	43
(1)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조치	43
(2)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할 조치	45
2. 우리 정부의 CSR 대응	46
(1) 기본 방향	46
(2) 대응 현황	47
(3) 향후 대응방향	49
3. 기업의 CSR 대응	49
(1)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현황	49
(2)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평가 및 문제점	52
(3)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56
〈참고 문헌〉	65

• 표 차례 •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용어와 정의	4
〈표 2〉 EU 주요국별 CSR 대응 현황	37
〈표 3〉 아시아 주요국(지역) CSR 대응 현황	38

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개념

1. CSR 개념의 구분

□ 경제적 책임·법적 책임

- Georgia대학 Carroll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및 자선적 책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우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기업 자체가 존재하는 목적으로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을 의미함.
 - 즉, 기업의 경제적 책임이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의미하는 것임.
- 기업의 법적 책임이란, 기업경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함.

-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라 할 수 있음.
- 한국 경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1960~1970년대 경제개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 기업의 주된 사회적 책임은 주로 경제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음.
 - 즉, 성장우선주의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품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음.
- 이처럼 성장우선의 경제적 책임을 중시하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노동·환경문제 등 기업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 즉, 기업의 본질적 존재인 경제적 책임 이외에 법적 실체로서 준법책임이 강조되었던 것임.

□ 윤리적 책임·자선적 책임

- 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그 영향력도 커짐에 따라 사회는 기업에게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이외에 추가로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요구하게 되었음.
 -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정보화의 발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킴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 기업의 윤리적 책임은 아직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즉, 기업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소비자,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등의 기대, 기준 및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임.
- 기업의 자선적 책임은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함.
- 상술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에게 윤리경영을 요구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음.

2. 국제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용어 중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 OECD나 ICC(국제상공회의소)에서는 ‘사회적(Soc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업의 책임이 사회문제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견해로 인하여 CR(Corporate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한편,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기업뿐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정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SR(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표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용어와 정의

	정 의	용어
UNCTAD	기업이 사회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	CSR
EU 집행위원회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기업활동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에 통합하는 개념	CSR
OECD	기업과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이 취하는 행동	CR
ILO	기업이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이니셔티브이며, 기업활동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	CSR
IOE (국제사용자기구)	법 준수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의 기업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활동	CSR
WBCSD (지속가능발전 세계기업협의회)	직원·가족·지역사회 및 사회 전체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	CSR
ICC (국제상공회의소)	기업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	CR
ISO (국제표준화기구)	조직이 경제·사회·환경문제를 사람·지역공동체 및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목적으로 다루기 위한 균형잡힌 접근 방법	SR

II. CSR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정부간 국제기구의 규범화 동향

(1) UN

- UN은 오래 전부터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종 규범을 제정해 왔으며 이는 CSR을 진전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

〈UN의 기본권 보장선언 규범〉

-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Rights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UN의 노력은 'The Global Compact'로 결정화되었음.
 - －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이 1999년 1월 WEF 연설에서

기업인들(business leaders)에게 ‘The Global Compact’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되었고, 2000년 7월 공식 출범하였음.

- ‘The Global Compact’란 기업들이 UN의 핵심기관, 노동계 및 시민사회들과 함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10개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국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동참하자는 것임.
 - ‘The Global Compact’는 기업의 행위나 활동을 강요하거나 조정하는 규제 수단, 즉 ‘경찰’이 아니며, 오히려 Global Compact가 기초가 된 원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공적 책무(public accountability), 기업의 투명성과 계발된 사익 추구,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 의존하자는 것임.
- ‘The Global Compact’는 네트워크로서, 그것의 핵심은 Global Compact 사무국과 6개 UN 기관이고, 또한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있음.

〈6개 UN 기관〉

-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 ‘The Global Compact’의 10 가지 원칙은 4개 UN 선언문에 기초

〈The Global Compact 10 가지 원칙〉

○ 인권(Human Rights)

- Principle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Principle 2 : 기업은 인권 학대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 노동 기준(Labor Standards)

- Principle 3 : 기업은 단체 교섭에 있어서 조합의 자유와 권리의 효과적인 인식을 지지하여야 한다.
- Principle 4 :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Principle 5 :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Principle 6 :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하여야 한다.

○ 환경(Environment)

- Principle 7 : 기업은 환경 도전에 대해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Principle 8 :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증진에 솔선하여야 한다.
- Principle 9 :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반부패(Anti-Corruption)

- Principle 10 : 기업은 부당가격 청구 및 뇌물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하여야 한다.
-

-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ILO'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 OECD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OECD의 CSR 규범화 노력은 1977년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 개정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선언'을 추가하였음.
 -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 노동조합, NGO에게 CSR에 대한 확고한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고용·환경·반부패·소비자이익·과학기술·세제·경쟁 등 8개 분야를 포괄,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및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를 권고하고 있음.

□ OECD Principles for Corporate Governance

- OECD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확실한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자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음(1999년 제정, 2004년 개정).

- Principle은 넓은 범위의 players들의 관심을 고려하고 있는데, 즉 주주의 권한, 주주의 동등한 대우,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인의 역할, 정보공개와 투명성, 이사회에 책임,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같은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Principle은 정부가 기업 관련 법률, 제도 및 규제를 평가·개선하고자 할 경우 benchmark로 사용되는 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OECD는 1999년 ‘국제거래관계에서 외국공무원의 부패척결에 대한 협약’을 제정하는 등 기업활동 관련 규범 제정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있음.
 - Convention은 뇌물 수수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측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모든 국가는 그들 국가 내에 있는 기업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제공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임.
 - 개정된 권고안은 모든 국가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지불된 뇌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deductibility)를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Convention의 목표를 1998년에 제정된 ‘Public Service에서 윤리 행위 증진에 관한 권고안’에 의해서 보완 하자는 것인데,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윤리 행위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와 시스템을 확보하고, ‘돈 세탁에 관한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작업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2. 비정부간 기구의 논의 동향

(1) 코 원탁회의(CRT : Caux Round Table)

- 1994년 7월, 도덕적 자본주의의 실현을 기치로 설립된 국제 경영자단체인 코 원탁회의(Caux Round Table)는 ‘CRT 기업원칙’을 발표하였음.
- 동 원칙은 공생과 인간존엄성을 강조하며 기업행동의 규범으로서 ‘법과 시장의 힘’ 외에 기업의 방침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이해관계자의 존엄과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천명하였음.

(2)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

1)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

-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을 ‘세계 반부패의 해’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있는바, 부패인식지수는 각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의 순위를 정하고 있음.

- CPI는 공공 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득을 위한 공직의 남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음.
- CPI는 평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경영자 및 전세계 분석가들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데, CPI는 믿을 만한 다양한 기관들이 수행한 전문적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부패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혼합지수임.
- 예를 들어, CPI 2004는 12개 독립된 기관이 수행한 18개의 poll과 survey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2년에 102개국 중 40위, 2003년에는 133개국 중 50위, 2004년에는 145개국 중 47위에 불과하여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 뇌물제공지수(Bribe Payers Index : BPI)

- 국제투명성기구는 1999년부터 부패인식지수(CPI)와는 별도로 뇌물제공지수(BPI)를 발표하고 있는데, BPI는 주요 수출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신흥 시장경제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요 수출국의 순위를 매기는 것임.^{1), 2)}

- 즉, BPI는 뇌물이 제공되는 국가에서 뇌물행위의 공급 측면을 측정하고 있는 것임.
- 한편 BPI 조사가 주로 신흥 시장경제 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 작업이 개발도상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적 부패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임.
- 참고로, 한국은 1999년 조사대상 19개국 중에서 18위였으며, 2002년에는 21개국 중에서 18위에 랭크되어 있는 등 뇌물제공분야에서 상당히 후진적임을 알 수 있음.

(3) NGO 활동 사례³⁾

- NIKE가 1990년대 중반 아동노동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이래 인권·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Amnesty International’, ‘Green Peace’, ‘Human Right Watch’ 등 비정부기구(NGO)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하여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1) BPI 2002상의 주요 수출국은 21개국으로 호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싱가포르, 독일,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이탈리아, 한국, 대만, 중국, 러시아이며, BPI 2002에 사용된 신흥 시장경제 국가는 15개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및 태국이다.

2) BPI 2002상의 주요 수출국에 속하면서 주요 신흥 시장경제 국가에도 속하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2개국이다.

3) 전경련(2005), “21세기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지향” 참조

- 이들 NGO들은 다국적기업의 개도국 공장들의 노동 및 환경조건 등을 문제삼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매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벌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영국의 NGO인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AFOD)'는 HP(Hewlett Packerd), IBM, DELL 등과 같은 PC 회사들이 자사 공급망(supply chain)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윤리·행동규범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음.
 - 즉, CAFOD는 다국적기업들의 자사 공급망에 대해 '당해 국가 노동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채용기준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인권문제를 다루는 NGO와 UN은 휴대전화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탄탈륨의 원료인 콜탄의 채굴이 증가하게 되어 콩고에서는 아동노동이 행해지는 등 인권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후 Nokia는 원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콩고산 탄탈륨의 구입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음.

(4) 기타 활동

- ICC Business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1991)
- Forest Stewardship Council(1993)
- Marine Stewardship Council(1997)

- Clean Clothes Campaign(1998)
- Ethical Trading Initiative(1998)
- APEC Business Code of Conduct(1999)
- Global Alliance for Workers and Communities(1999)
- The Global Sullivan Principles(1999)
- Worldwide Responsible Apparel Production(2000)
- Workers Rights Consortium(2000)
- Proposed framework for ISO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2001)
- The Good Corporation Accreditation Scheme(2001)
- Sustainable Triple Bottom Line(2002)
-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2002)
- The Keidanren Charter for Good Corporate Behavior(2002)
- The Publish What You Pay Campaign(2002)
- WEF Statement 'Global Corporate Leadership Challenge'(2002)
- Kimberl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2003)

3. ISO의 국제표준화 동향

(1) 표준화 추진 배경 및 경위

□ 규범화와 표준화의 관계

○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존의 국제적, 국가적 접근방식의 주류는 규범화를 통한 방식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규범화의 범주는 관심 영역에 따라 인권, 환경, 반부패 등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상기 특정 분야의 책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범화를 의미하고 있음.

○ 한편, ISO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화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규범화에 기초를 두면서도 ISO 표준의 특징인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를 접목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존 규범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표준화 추진 배경

○ 최근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CSR이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라, ISO는 이들 국가의 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멕시코는 자국 SR 표준

을 제정하였고, 캐나다는 CSR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윤리임원협회(Ethics Officer Association)는 ISO에게 윤리경영의 표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표준화 추진 경위

- 2001년 9월, ISO의 소비자정책위원회(Consumer Policy Committee: COPOLC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표준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online으로 IS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였음.
- 2002. 6. 21.~22., 스웨덴에서 ISO/COPOLCO 주관 CSR Workshop을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는바,
 - CSR은 ISO의 MSS(Management System Standards) 등과 같은 범주에서 표준제정(예를 들어, ISO 9000, ISO 14000 등)이 필요하고,
 - 이는 선진국, 개도국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각종 기관, 기구에도 적용 가능해야 하고,
 - 이를 위해 ISO는 UN, ILO, OECD 등 타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CSR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 2002년 9월, ISO 기술관리이사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 TMB) 결의에 따라 SR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을 구성하고, 2004년 4월 SR 자문

그룹에서 SR 실무보고서(Working 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를 제출하였음.

- 2004. 6. 24.~25.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ISO 기술관리이사회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NGO 등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SR에 대한 표준 guideline을 작성기로 의결하였으며, 2004년 9월의 제31차 기술관리이사회에서는 SR 표준화 작업반을 출범시키기로 의결하였음.
- 2004. 10. 1., TMB 부의장 명의로 ‘Guideline on Social responsibility’ 제정을 위한 신규표준제정안(New Work Item Proposal)을 ISO에 제출하고, TMB의 결정에 의해 브라질과 스웨덴을 Project Leader로 지정하였음.
- 2004. 10. 7.~2005. 1. 7.까지 신규표준제정안에 대해 회원국 투표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표준제정안에 찬성하였음.

(2) 제1차 ISO/TMB/WG SR 회의

- 2005. 3. 7.~11.까지 브라질 살바도르에서 제1차 사회적 책임 표준작업반(Working Group on Social Responsibility: WG SR) 회의가 개최되어, 장래에 SR guideline을 제공할 것인 ISO 26000 표준에 대한 개발 작업이 시작되었음.
 - 제1차 WG SR 회의에는 43개 ISO 회원국(21개 개도국 회원국 포함) 대표와 24개 조직(organization)의 연락관이

참여하였으며, ISO/TMB/WG SR 임원을 선출하였음.

- 의장(Chair)/브라질 : Jorge Emanuel Reis Cajazeira
부의장(Vice-Chair)/스웨덴 : Catarina Munck af
Rosenschold
간사(Secretary)/스웨덴 : Kristina Sandberg
간사(Co-Secretary)/브라질 : Eduardo Campos de Sao
Thiago

- ISO가 SR 표준 작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개도국 회원들의 강한 후원이 있었던 것처럼, ISO는 SR working group의 지도부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개도국의 국가표준기구(the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of a developing country)에는 브라질(ABNT)을, 선진국의 국가표준기구에는 스웨덴(SIS)을 한 쌍으로 선출하였음.
 - National standards institutes는 ISO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SR 표준을 위한 Working Group은 사회적 책임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정보를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인데, 예를 들어 기업, 정부, 노동계, 소비자, NGO 및 기타의 6개 이해관계자 그룹들의 균형잡힌 대표단(balanced representation)은 물론이고, 지역 및 성별에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음.
 - 또한, 국제기구의 대표자(delegates)도 직접 참가할 수 있

으며, 이는 대표자들뿐 아니라, WG 임원들 및 ISO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 될 것임.

- WG는 32개 결의안(resolutions)을 공식화하였는데, 이들 결의안의 대부분은 WG SR의 장래 작업을 구체화시키게 될 것임.
- WG SR의 첫 번째 회의에서 주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으로는,
 - 장래의 표준의 영역(the scope of the future standard)
 - WG의 관련 용어(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WG)
 - WG의 조직(the structure of the WG)
 - 하부조직 지도부의 할당(allocation of the leadership of its subgroups)
 - 특별 작업절차의 개발(the development of special working procedures)
 - 보고서 발행 예정 일자(a target date for publication)
- Working Group decision에 포함된 사항
 - 의장 자문그룹(Chair Advisory Group)의 설립, 관련 용어 및 회원(자격, 수)
 - Task Group(TG)의 설립

- TG 1, 자금의 조달 및 이해관계인 참여(*Funding and stakeholder engagement*) ; 이는 개도국 및 소비자단체처럼 재원이 충분치 않는 그룹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자는 것임.
 - TG 2, 의견교환(*Communication*) ; 이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보급하는 수단을 개발하며, 다른 TG들과의 의견교환을 활발히 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선전자료 및 의견교환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WG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TG 3, 운영절차(*Operating procedure*) ; 이는 WG의 진행을 위하여 절차를 개정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발하는 작업을 하자는 것임.
- 장래의 SR 표준 그 자체와 관계가 있는 양상(aspects)과 관련이 있는 3개의 잠정적(interim) Task Groups를 설립하기로 함. 이들은 우선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특유한 이슈를 개발하고(explore), 다음으로 그 이슈들이 설계 명세서(design specification)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로 함. 잠정 task groups들은 그들의 첫 번째 미팅에서 자신들의 명칭을 결정하기로 하고, 이들은 다음의 견해(aspect)를 발표하기로 함.
- interim TG 4는 이해관계자의 신원 확인, 참가 예약 및 전달을 개발할 것임.

- interim TG 5는 SR의 핵심 문맥(core context: 이슈, 정의, 원칙)을 개발하고, 그리고 조직과 사회 간의 접점을 개발할 것임.
- interim TG 6은 표준을 잠재적으로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를 개발할 것임(예를 들어, 어떠한 wording을 사용할 것인지).
 - 모든 조직(organizations)들이 SR core context를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도(guidance)
 - 특유한 조직들에게 적합한 지도
- Editing Committee의 설립
- Spanish Translation Task Force(STTF)를 설립하여 ISO 26000의 최종 문서뿐 아니라, 효과적인 참여를 위하여 작업 문서도 번역하도록 하는 데 동의함.
- WG와 WG의 모든 하부 그룹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운영 절차를 채택함.
- ISO가 ILO와 함께 이룬 SR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운영절차를 채택함. MoU는 ISO 26000이 ILO 국제 노동 표준과 양립하면서, 그리고 보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조직들 간의 협력(cooperation)을 정의하고 있음.

□ ISO SR 표준 (ISO 26000) 기본체제(안)

- ISO SR 표준은 “무엇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보다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관리체제(management system)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서 동 표준의 기본체제는 다음과 같음.

〈ISO SR 표준의 기본체제(안)〉

① 범위

② 규범적 참조

③ 용어 및 정의

④ 기본원칙

- 국제기구와 규범(UN 헌장과 선언, ILO 헌장과 선언, UN Global Compact 등), 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 문화 및 경제적 차이점 등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신뢰와 만족을 통한 지속성 달성과 사업의 연속성 등을 존중

⑤ 기본체제

- 조직의 비전, 목적, 가치, 정책, 전략 및 SR 이행 간의 관계
- SR 범위, 정책 및 의무, 목적, 조직관리, 자원배분, 권한 및 의무, 규제의 기본체제, 의사소통

⑥ 조직 내 SR 관리

- 예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SR 이슈 규명, 분석 및 평가, 이행, 성과, 이행 감시, 유지 및 개선

⑦ SR 커뮤니케이션

(3) ISO SR 표준(ISO 26000)의 영향 및 향후 일정

□ ISO SR 표준의 영향

- ISO는 비정부간 국제표준화기구로서 동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 또는 가이드는 원칙적으로 강제적 효력은 없음. 그러나 동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규범화되거나 수입국 또는 수입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임.
 - 예를 들면,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ISO 9000(품질경영) 표준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강제성을 전혀 띠고 있지 않았으나, ISO가 동 표준을 제정한 후 EU가 공산품에 대한 역내 강제검사제도인 CE 마크에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체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ISO 9000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함에 따라,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EU 내 수입상들이 ISO 9000 인증서를 요구하게 되어 동 인증이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 현재로서는 ISO에서의 SR 표준화 논의는 초보적 단계이고 우선 SR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서적 성격으로 2008년까지 제정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동 표준이 인증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나갈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 그러나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차원의 국가규격을 제정하고 이미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 상이한 규격과 기준 차이로 인하여 무역상 기술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편적인 국제표준 제정과 인증제도의 도입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 ISO의 SR 논의는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조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정부, 각종 단체, 노조 등 정부간 및 비정부간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될 것임.
 - 따라서, 동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과 정비작업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ISO에서의 SR 표준화 논의 동향과 함께 현재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동향에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하겠음.

□ 향후 일정

- SR 표준을 개발하는 데 3년이 소요될 것이며, 2008년 3월경 국제표준을 발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2005. 3.~2006. 3. 작업반 회의(3회), 작업반 초안(WD) 작성
 - 2006. 4.~2007. 2. 작업반 회의(2회), 위원회안(CD) 작성 및 회람
 - 2007. 3.~2007. 9. 작업반 회의(1회), 국제표준안(DIS) 투표
 - 2007. 9.~2007. 12. 최종국제규격안(FDIS) 투표
 - 2008. 3. 국제표준 발간

4. 주요 국가별 CSR 대응 동향

- 세계 각국은 CSR 국제 표준화 움직임에 대하여 정부나 민간기구 혹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1) 미국

- 미국은 가장 오래 전부터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왔음. 미국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경영방식이나 회계제도, 기업의 기부행위 등을 중심으로 CSR이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종업원에 대한 인격적 대우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등도 함께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조직에서의 윤리와 준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경쟁국 기업들도 부패방지 메커니즘을 갖추고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사건 이후 CSR 관련 규율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
- 정부 차원에서 CSR 국제 표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 다만, 연금기금이나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투신회사 등 민간의 영리·비영리 조직의 주도하에 CSR에 대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미국은 록히드 뇌물사건 이후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제 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동 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모든 기업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철저한 실행시스템과 감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미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9년 ‘해외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상무부에게 향후 5년간 매년 OECD 회원국의 이행입법상황, 협약과 적합성 여부, 민간부문 및 비정부기관의 반부패활동 등을 평가하여 ‘OECD 부패방지협약’ 이행현황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Peer Pressure 형태의 윤리경영시스템 : Principles of Business Ethics and Conduct

- 1986년 2월 대통령 직속 ‘국방관리를 위한 Blue Ribbon 위원회’는 조달비리 개선을 위하여 Peer Pressure 형태의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을 권고하였음.

- 이에 국방성과 거래하는 GE, 보잉, 록히드 등 50개 군수업체는 이 권고를 수용하여 기업윤리강화를 위한 군수산업체모임(DII: Defence Industry Initiative)을 구성하고 기업윤리행동원칙(Principles of Business Ethics and Conduct)을 제정하여 군수산업체가 동 원칙을 준수한다는 공약을 하게 되었으며, 매년 18개항으로 된 준수 여부 질의서를 작성하여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음.

□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미국은 1989년 ‘내부비리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기업 등 조직의 활동이 비윤리적, 불법

적 또는 사회에 해가 된다고 여길 경우, 그 조직원이 해당 조직의 신고사무국 또는 외부의 신고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보호장치임.

□ 부정청구법(The False Claim Act, 1986 개정)

- 정부와 거래하는 민간부문이 CSR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발견한 민간인이 법원에 제소하거나 또는 당국에 고발하면, 회수금액(손해액의 3배)의 일정액(최고 3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 미국 판결위원회(The US Sentencing Commission)는 1991년 연방판사가 조직의 범죄행위를 판결하는 데 지침이 될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판결 가이드라인(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 FSGO)’을 제정하였음.
- 연방판결 가이드라인은 기업·조직이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업의 성격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되며, 다만 조직내 통합적 윤리경영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형량 및 과징금을 감하여 주는 등 적용상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정기적·공식적 감사와 전담인원 구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공식 시스템도 인정되고 있음. 단, 회계기준을 감독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 2004년 개정지침은 조직의 규율준수 판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조직 대상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고 있음.
- 연방판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i) 종업원 행동강령이 있고, ii) 준법담당 임원을 두고, iii)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iv) 평소에 기업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v)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준법감사를 실시하고, vi) 비윤리적 행위는 철저히 처벌하고, vii)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범죄라도 형량을 가볍게 해 준다는 것임.
- 이처럼 가이드라인대로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형량의 90%를 감형해 주고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400%까지 가중형을 내리고 있음. 참고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은 연방판결 가이드라인에 맞게 윤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상태인 반면에, 가중형을 받는 기업의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인 실정임.
- **상장시 윤리경영 의무화**
- 최근 윤리경영의 국제적 동향으로는 표준화 이외에 의무화가 있는데, 2001년 엔론, 월드콤 등 분식회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장기업들에게 윤리헌장의 제정 및 실천을 의무화하고 있음.
- **Sarbanes-Oxley Act(기업회계 및 투자보호법)**
- 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은 미국 엔론 사건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 첫째, 회계법인의 도덕적 해이 및 이해충돌(interestconflict)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자율적 감사에 위임하였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를 연방증권거래소(SEC)에서 회계법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는 것이며,
 - 둘째, 기업회계에 대한 CEO나 CFO의 구속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임. 즉, CEO나 CFO가 회계장부의 부적정을 알면서도 회계장부를 인증한 경우에는 최고 2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식회계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임.
- 한편, Sarbanes-Oxley Act가 미국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NYSE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것이므로, NYSE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 EU

1) CSR에 대한 논의의 확산

- 유럽의 경우 CSR에 대한 논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활발한 편인데, 이는 유럽의 기업 관련 제도가 기업, 노동자, 투자자, 정부, 사회단체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유럽식 윤리문화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01년 7월,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발간.
- Green Paper는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CSR 전략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즉, 기업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노동자, 주주, 투자자, 소비자, 정부 및 NGO)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자발적인 commitment가 이윤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임.
- 2000년 3월, Lisbon에서의 European Council은 기업들이 평생교육, 작업조직(work organization), 동등한 기회, social inclusion,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배려해 줄 것을 간청하였는바,
- EU는 2000년 3월 Lisbon에서 채택된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CSR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임.
 - 여기서 전략적인 목표란, 풍부하고 질 좋은 직업을 창출하고 사회적 유대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2010년까지 가장 경쟁적이고 다이내믹한 지식기반경제를 이루자는 것임.
- Green Paper의 목적은, 첫째, CSR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CSR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음.

- 구체적으로는, EU가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어떻게 CSR을 장려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어떻게 기존의 경험을 최대한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혁신적 실행의 개발을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투명성을 높일 것인지, 어떻게 평가 및 인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음.
- Green Paper는 기업이 자신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경영에서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끌게 된다는 것을 점점 인식해 가고 있으므로, CSR을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관심사를 기업 활동 및 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관계에 자발적으로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CSR의 실천은 公·私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co-operative)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업에서 존재할지라도, CSR 개념은 주로 대기업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음.
- EU 위원회는 2002년 7월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ncer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 Busines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발표.
- 2001년 Green Paper 발간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

당한 반응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CSR 개념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확신하였음.

- 그러나 그 이해관계자들이 표방하는 입장에는 아래와 같이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
- Enterprise : 기업들은 CSR의 자발적인 성질 및 지속가능한 발전 문맥에서의 통합을 강조하고, 또한 CSR의 내용은 global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기업들은 ‘one-size-fits-all’과 같은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음. 즉, 한 가지 기준이 모든 것에 적절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강조.
 - 또한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EU 차원에서 CSR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비생산적이 될 것인바, 왜냐하면 CSR의 성공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는 우선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것임.
- Trade un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발적인 주도만으로는 근로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최소한의 기준을 설치하고 분야에서의 활동 기준(a level playing field)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옹호하고 있음.
 - 그들은 또한 CSR의 실시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SR의 실시가 businesses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개발되거나, 시행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Investors : 투자자들은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펀드 및 연금펀드 에이전시들의 방법론과 투자 기법을 평가하면서, 기업의 실천에 대한 발표와 투명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Consumers' organizations : 소비자단체들은 제품과 용역이 생산되고 거래되는 데 있어서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 The Council : (유럽)회의는 CSR에 대한 유럽식 접근은 CSR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현존하는 수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유럽)회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유대, 기본권을 위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business (중소기업에서부터 다국적기업에까지) 및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경제사회위원회는 유럽이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들의 현존하는 협정들의 지침과 함께 자발적인 행동과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원칙들이 참조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음.

- The European Parliament : 유럽 의회는 특히 지역 및 사회적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그리고 EU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CSR 강령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EU 권한의 모든 영역에 CSR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음.

2) EU의 CSR 정착을 위한 전략

□ EU action framework for CSR

- EU는 CSR이 원칙상 기업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향후 CSR의 정착이 사회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음.
- 첫째, 세계화 추세에 부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CSR 정착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
 - 즉, CSR 정책을 통해 기업의 모범적인 관행을 장려함으로써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 현재와 같이 서로 다른 CSR 정착을 위한 수단이 확산될 경우, 기업간 비교가 어렵고,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게 되어 결국 시장 왜곡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즉, CSR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국가간, 기업간의 상이한 기준, 제도 및 절차가 도입되어 CSR의 포함영역, 목적, 실행, 기업과 산업의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상호 비교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임.
- 따라서, CSR 정착을 위한 수단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EU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바, EU 집행위원회는 2002년 10월, EU 차원의 CSR 다자간 포럼(CSR EMS Forum : EU Multi-stakeholder Forum)을 설립하였으며, 동 forum을 통하여 기존 윤리강령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향후 기준들이 통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는 것임.
- 동 포럼에는 기업, 노조, NGO, 투자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 또한 EU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기 위한 EMAS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시스템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EMAS를 CSR의 핵심제도로 권장하려고 함.
-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10월, ‘기업연례보고서 작성지침’ 제안서를 발표하여, 종업원 500인 이상의 상장기업의 경우 ‘3중 결산제도(Triple Bottom Line: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를 모두 포함하여 영업보고서를 발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Principles for Community action

○ EU 차원에서 설정한 CSR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음.

i) CSR의 자발적 성격을 인정한다.

<표 2> EU 주요국별 CSR 대응 현황

덴마크	1996년 EU 최초로 환경보고서 법제화
네덜란드 노르웨이	1999년 환경보고서 법제화
독 일	2001년 8월 연·기금 운용회사에 대해 윤리·환경·사회 보고서 제출 의무화
오스트리아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정보공개 의무화
프랑스	1979년 노동조건 보고서 제출 의무화 2001년 5월 회사법 개정(상장기업의 재무·환경·사회 측면의 정보공개 의무화), '신경제규제법 제정(상장기업의 연차 재무보고서에 사회적·환경적 영향 내용 포함 의무) 2002년 5월 CSR 장관 임명
영 국	2000년 7월 연금법을 개정, SRI를 연금펀드투자 기준 채택 2001년 4월 통상산업부(DTI) 내 세계 최초로 CSR 장관 임명 현재 '기업책임법' 제정 추진 (경제·환경·사회 측면의 대응을 보고서에 기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경영진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의무화)

- ii) CSR 관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iii) EU 차원의 노력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 iv)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문제에 대한 균형 있고 포괄적인 접근을 추진하도록 한다.
- v) 중소기업이 제기하는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다.
- vi) 기존의 국제협약 및 제도(예를 들어, ILO 핵심 노동기준,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와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3) 아시아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EU에 비해 사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상황임.

〈표 3〉 아시아 주요국(지역) CSR 대응 현황

일 본	1997년 '경영윤리실천연구센터' 설립(유력 기업 7개사 출연) 경단련 주관 SR 현장 채택, 대응조직 구성 2002년 경제산업성 주도로 CSR 표준위원회 설립, ISO 활동 적극 참여, CSR 일본규격 제정 중
싱가포르	총리실 산하, 부패실태조사국 설치(CPIB) 설립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5위
홍 콩	1974년 '염정공서'(부패방지위원회) 설립 홍콩윤리개발센터 설립, 법규준수가이드 발간 등

- 최근 공직윤리, 준법경영, 윤리경영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크게 제고되어 CSR에 대한 대응 본격화

5. 다국적기업의 CSR 대응 사례⁴⁾

(1) 자사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CSR 전과

- 세계 IT 업계는 크게 3개 기업군을 중심으로 자사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해 CSR을 전과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바,
- 첫째, 2004년 1월 영국의 NGO인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CAFOD)’가 Hewlett Packerd, DELL, IBM 등의 자사 공급망의 종업원의 노동환경 문제점을 지적하였을때 이들 기업은 처음에는 각자 대응하기 시작하였음.
 - 그러던 것이 2004년 10월에는 각 사가 대응하는 방법 대신에 공동 대응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구매방침(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을 발표하였음.
- 둘째, Microsoft, Intel, Cisco, Hewlett Packerd, SAP, Seagate, SONY 등 7개사가 공동으로 미국에서 CSR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였음.

4) 전경련(2005), ‘21세기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지향’ 참조

- 특히, 자사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는 risk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각 사 거래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통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HP, DELL, IBM의 공동구매지침을 지지하게 되었음.
- 셋째, BT, 도이치텔레콤, 에릭슨, Nokia 등 유럽 전화회사 및 IT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TC) 업계 공통의 공급업체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Toshiba 등 IT 기업들도 CSR을 고려하면서 그룹의 조달방침을 제정하고 있음.
 - 2004년 2월 이후 국내외 1만 개사 이상의 거래처에 대해 조달방침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였는바, 일본과 미국의 조달처부터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유럽, 아시아의 거래처로 확대할 예정임.
 - 조달방침에는 자사 공급망에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차별의 철폐, 안전하고 청결한 작업환경 유지 등을 포함시키는 등 인권이나 노동문제를 고려하고 있음.

(2) 일본 NEC의 CSR 추진 사례

- 일본 NEC는 CSR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i) CSR 추진방침의 명확화와 체제정비, ii) Risk 축소를 위한 경영 전략과 자사 공급망(supply chain)에 대한 사업 전개, iii) 사회적 가치창조와 연계한 기업 이미지의 제고, iv) 이해관

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communication 촉진, v) CSR 경영추진상황의 파악과 지속적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NEC는 CSR 추진방침의 명확화와 체제정비를 위하여 ‘CSR 비전’을 제정하였으며, ‘CSR 비전’은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win-win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NEC는 CSR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NEC의 기업이념’과 ‘NEC의 기업행동헌장과 행동규범’을 철저히 실천하는 데 두고 있음.
 - NEC의 기업이념은 C & C(Computer & Communication)를 통해서 세계인들이 상호 이해를 구하고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자는 것이며,
 - NEC의 기업행동헌장은 고객만족, 신기술 도전, 공정한 기업활동, 정보제공, 지구환경보전, 지역사회와 조화, 사회공헌활동, 인권 존중, 종업원 존중, 지적 자산 및 개인정보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동규범은 사회·고객·거래처·주주와의 관계, 정보관리 등에 있어 사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NEC가 추진하는 CSR의 기본방침은 기업 안팎의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를 줄이자는 것인바, 기업의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품질, 환경, 고객정보, 공정거래, 노동 및 위생, 인권 등 여섯 가지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NEC의 CSR에 대한 총론 교육은 기업 내부의 각 사업부문이나 관계 회사의 CSR 추진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CSR에 대한 각론 교육은 기존의 직원(staff)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CSR 요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한편, NEC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SRI 인덱스나 NGO 및 언론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Ⅲ. 우리 정부 및 기업의 CSR 대응방안

1. CSR 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일반론)

- CSR 증진을 위한 정부 전략은 강력한 규제에 의하거나 혹은 부드러운 자발적인 접근법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음.
 - 이는 정부가 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원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될 것임.
- 또한 정부는 CSR 증진을 위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규제라는 ‘회초리’와 재정적 혹은 기타 지원 형식의 ‘당근’ 모두를 겸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1)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할 조치

- 정부가 CSR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치(action)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입법권, 조세권 등)이 가장 강하기 때문임.

- 정부가 CSR 증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역할로는,
 - ①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이나 목적을 근거로 하여 최소한의 표준을 제정하거나 규제하는 것(legislating and regulating)
 - 예를 들어, 환경보호,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 등
 - ② 최소한의 표준을 제정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policing and penalizing)
 - ③ 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 기구에 규제를 결합시키는 것
 -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 재생에너지 사용의무(renewable energy portfolio obligations) 등
 - ④ 최소한의 표준에 순응하도록 기업에 강력하거나 혹은 작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 ⑤ 보고(reporting) 또는 보증기구(certification schemes)를 개발하는 것
 - 이 때, 정부는 동 기구에 주도자, 공동 개발자, 출자자 혹은 승인자(endorser)로서 참여할 수 있음.
 - ⑥ 적절한 입법을 통해서 정보 및 투명성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것
 - ⑦ CSR에 관한 가장 좋은 실행을 인식하고 지원하고 전파하는 것

- 한편, 일부 개도국 정부는 상기의 접근방법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때 국가 차원에서 CSR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공자(donors)가 양자 혹은 다자 간에 정부 능력의 개발을 지원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음.
 - 다자 간의 예로는, UNDP Growing Sustainable Business Initiative, the World Bank CSR Practice,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s 등이 있음.

(2)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할 조처

- 정부가 CSR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 차원의 조처(action)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조처가 국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음.
 - ① 국제적 규범을 민간 부문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위 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② 국제적인 CSR agenda에 대해 명확성과 일관성을 도입하고, 한정된 주도자들에 의한 개발 및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CSR 결정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 ③ 국가 차원의 기업지배구조가 부실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국제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음.

- ④ 국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CSR 이행이 세계에 미치도록 정치적 힘을 창조하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음.
- ⑤ 모든 국가가 CSR 증진을 위하여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야기될 경쟁상의 불이익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2. 우리 정부의 CSR 대응

(1) 기본 방향

- CSR은 1차적으로는 기업의 문제이나, CSR의 정착 여부가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 CSR 확산을 위해 global standard 도입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CSR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새로운 규제를 생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할 것임.
 - 왜냐하면, 현재 국내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또다른 정부개입의 대상으로 떠올라 궁극적으로 정부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임.

- 이는 과거 국내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이 공적 기부금이나 수혜 의연금 납부, 각종 협찬성 기부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국내기업들은 상기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준조세’ 납부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⁵⁾
- 대외적으로는 CSR 관련 국제 규범화 및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동향에 국내기업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

(2) 대응 현황

- 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규범과 제도가 ‘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을 선진수준으로 제고
 - 경영지배권(M&A)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경쟁부문도 OECD, WTO, IMF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

* 단, 출자총액제도와 같은 대기업집단시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평가에 차이가 있음(OECD : 시장에 의한 규율이 바람직).
- ②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5) 외부 referee의 comment를 참조하여 기술하였음.

-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2002. 1.)
 - 2005. 3. 9. '투명사회협약' 체결(대통령, 각계 주요 인사 서명)
- ③ '기업사랑협의회' 출범(2004. 8.)
- 산자부, 경제 5단체, 벤처기업협회, YMCA로 구성, 반기업 정서 완화를 위한 경제교육 및 CSR 대응활동 수행
- ④ CSR 모범실천 기업인 포상
- 故 유일한 박사 시상, 유일한路 명명식 개최 (2004. 4.)
- ⑤ 윤리경영 실태조사 실시 및 발표
- 산자부와 산업정책연구원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조사 실시
- ⑥ ISO SR 표준화 대응
- 산자부 기술표준원, ISO SR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CO-POLCO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정회원 가입(2002. 5.)
 - ISO/COPOLCO 총회 및 CSR 워크샵 참가(2002. 6.)
 - 국내 'CSR 전문위원회' 구성(2002. 7.)
 - 현재, CSR W/G 전문가 참석, 대응 중
 - 'SR 표준화 포럼' 구성 추진 중(기술표준원)

(3) 향후 대응방향

- ① 국제규범과 관행에 Global Standard 도입
- ② minimum standard 규범화
- ③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개발
- ④ CSR 국제규범화·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응
- ⑤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CSR 포럼' 구성 등

3. 기업의 CSR 대응

(1)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현황

1)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실천

- 국내기업들, 특히 재벌 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혹독한 기업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이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 기업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
- 또한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시행하지 않는 기업은 국제적 신인도가 저하되어 무역 및 해외투자 부문에서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인식도 갖게 되었음.

- 산업정책연구원은 2002년 한국 50대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및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⁶⁾ 조사대상은 국내 3년 매출액 가중치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5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 중 30개 기업이 응답하였음.
- 조사 설문은 i)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실태, ii)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조사, iii) 윤리경영 자체평가 등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음.
 - 첫째,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응답 기업 중 86%가 기업윤리 현장이 제정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며, 나머지 기업도 향후 몇 년 안에 도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윤리경영시스템 도입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윤리강령을 제정한 기업 중 20%만이 윤리강령을 정기적으로 수정한다고 밝혀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둘째,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응답 기업 중 86%가 윤리경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윤리경영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리경영 표준화 작업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단, 과반수 이상(50%)이 '국가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해 표준화에

6) 자세한 것은 산업자원부-산업정책연구원(2002) 참조.

대한 접근 방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셋째, 윤리경영 자가진단 항목에서, 응답 기업의 57%가 ‘아직 시작단계’라고 응답하여, 현재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정을 알 수 있음. 또한 스스로 윤리경영 체감지수를 책정하는 항목에서 전체 평균 72.6점에 금융권 평균 76점, 비금융권 평균 71.4점을 기록해 금융권이 비금융권보다 윤리경영에 더 후한 점수를 주었음.
 - 이는 최근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후, 금융권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서 제도강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큰 방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는 몇몇 재벌기업들의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⁷⁾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과 관련하여 순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는 먼 나중의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자선적 책임으로 한정하거나 혼동하고 있기 때문임.

7) 외부 referee의 comment를 참조하여 기술하였음.

2) 윤리경영 관련 CEO의 실천의지⁸⁾

- 윤리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CEO의 의지라 할 수 있음.
 - － 참고로, 전경련이 2003년 말 공기업을 포함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응답 기업 309개 중 64.0%가 ‘CEO의 의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였음.
 - － 따라서, CEO가 윤리경영 전도자로서의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평가 및 문제점⁹⁾

1)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평가

- 한국에 윤리경영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은 까닭에, 아직은 윤리경영이 추가로 확산되고 정착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음.
-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8) 전경련(2004), CEO Report 참조.

9) 본 절 ‘(2) 국내기업 윤리경영의 평가 및 문제점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동수(2004),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참조.

윤리경영이 한국의 기업문화로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부문의 경우, 그 동안 대기업 및 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선진국 대기업에 비하여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 Fortune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95%가 윤리강령과 조직 내부의 실천시스템(compliance program/risk management system)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30대 그룹 기업이 윤리강령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더욱 저조한 실정임. 이처럼 윤리경영 도입 및 정착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에의 장애요인

- 첫째, 윤리경영체제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임.
 - 주요 인프라에는 i) 표준 기업윤리강령 및 실천 매뉴얼, ii) 기업윤리강령 전문가 및 전문기관, iii) 기업윤리강령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peer pressure체제), iv) 윤리경영 우수기업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 있음.
- 둘째,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CEO의 인식 변화임.

- 대부분의 국내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이나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재무팀에 비하여 아주 ‘한직’이라는 인식이 조직 내에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인력의 질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그러다가 CEO가 관심을 표명하면 그 때서야 재무팀에서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게 되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홍보 등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¹⁰⁾
 - 즉,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착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부가 권고하고 있으므로 마지못해 수행하는 것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임.
- 셋째, 윤리경영이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윤리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업의 성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및 홍보가 부족하고, 기업을 윤리경영으로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부족함.
 - 또한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한 정책을 고안, 홍보,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부조직이나 부처간 협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기존의 정책도 장기적 관점에 의해서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요구

10) 외부 referee의 comment를 참조하여 기술하였음.

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경향이 있음.

- 다만, 앞서서도 기술하였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노력이 정부 개입 혹은 정부 규제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은 경계하여야 할 것임.
- 넷째, 중소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은 불모지나 다름이 없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고 윤리경영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필요재원도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 CEO의 행동에 대한 견제장치가 더욱 취약한 실정임.
- 다섯째,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도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반면에, 아직까지는 경영교육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한 상태임.
- 여섯째, 한국에서의 윤리경영 도입 및 보급은 전경련,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과 관련된 경제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한국의 소비자단체, 투자자들의 경우 아직은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시민단체들은 재벌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정적 사항의 고발 등 네거티브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음.

(3)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¹¹⁾

1) 윤리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강조

□ 윤리경영과 경쟁력과의 관계

- 세계화 시대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기업정보가 신속히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윤리가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 즉, 세계화의 진전 및 소비자(고객) 중시 현상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제품의 가격 및 품질 못지않게 기업의 brand name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대두된 것임. 좋은 기업·존경받는 기업은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음.
- 따라서, 한국 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체제의 확립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함.
 - －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윤리경영을 기업문화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때에 정부는 기업이 윤리경영을 정착할 수 있도록

11) 본 절 '(3) 국내기업 윤리경영의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동수(2004),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참조.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란 기업이 윤리 경영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임.

- 즉, 기업의 윤리경영은 법적 규제 차원을 넘어서 기업 스스로 도입하는 활동으로서 결국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인식을 교육·홍보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경쟁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제부터는 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기업 활동에 형식적으로 추가되는 옵션이 아니라 기업의 주요한 운영방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 한편, 정부는 윤리경영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연기금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를 기업에 전파할 수 있음.¹²⁾
 - 즉,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이윤추구 및 시장에서의 기업가치 평가를 중시하는 기업의 속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수단으로 판단됨.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기금을 이용하는 방향은 시장

12) 외부 referee의 comment를 참조하여 기술하였음.

을 교란하지 않고 기업들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2)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도입 지원

- 윤리경영은 재무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여유 있는 대기업만이 추진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스스로가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임.

□ 중소기업정책으로서의 윤리경영

-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경우, 경쟁제한적인 규제나 지나친 보호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대에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바, 중소기업의 윤리경영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첫째, 중소기업이 윤리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전경련 등 대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주도가 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

에서의 윤리경영 추진은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게 중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윤리경영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즉,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윤리경영을 도입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임.
 - 중소기업청은 향후 경쟁제한적 규제인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지정계열화품목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음. 이처럼 규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폐지하는 때에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시장경제 확립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임.
- 셋째, 중소기업이 도입하기에 적합한 맞춤형 toolkit 등을 개발하여 윤리경영을 자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윤리경영 현황 및 문제점을 직접 측정·평가해 볼 수 있는 ‘윤리경영 진단모델’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품질경영(Quailty Management)을 위해 MB賞(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MB 상의 심사기준을 활용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즉, 미국품질협회가 ‘Quality Progress’ 1995년 5월호에 MB

상의 심사기준 활용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당시까지 MB 상에 도전한 기업은 불과 546개 기업이었으나 배포된 MB 상 심사기준은 100만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임. 이처럼 엄청나게 배포된 심사기준의 용도를 조사해 본 결과, 심사기준을 가져간 개인 및 기업의 80% 이상이 심사기준으로부터 경영품질의 획기적 향상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는 것임.¹³⁾ 즉, 당장에는 윤리경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중소기업일지라도 이들의 무관심을 방지하기보다는 최소한 몇 가지의 심사기준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넷째,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모범사례 및 관행자료를 발굴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대기업 주도의 윤리경영에 동참

- 다음은 윤리경영을 시행하는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윤리경영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임.
 - － 첫째, 중소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윤리경영에 동참한다는 약속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 협력업체 중 윤리경영 동참에 미흡한 113개 업체를 초청하여 윤리경영 동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경영 준수 약속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음. 또한 포스코, 금

13) 고동수(2004), “경영품질 위한 창의성·자율성예의 지원” 참조.

호아시아나, 신세계 등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음.

-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윤리경영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CEO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경영자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임.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윤리경영 요구

-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8%이고, 제조업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66.2%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산업(특히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실태

- 한국은 오래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의 윤리경영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자리잡았다고 얘기할 수 없음.
 -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시정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만 이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자율적으로 해결 유도

- 기업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시행하는 것이 윤리경영의 본질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상기와 같은 대기업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것 역시 대기업 스스로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임.
 - 또한 이것이 중소기업은 물론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인지하여야 함.
-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대기업 임직원 스스로가 중소기업체를 하청업체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품을 공동 개발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기업이 하

도급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협력업체에 이중삼중의 하도급 관계를 형성해서 대기업의 책임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음.

□ 다소 강제성을 지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

-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협력업체’라 불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청업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논의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임.
 - － 즉,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갑’과 ‘을’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형식적으로만 협력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업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의 폐해 정도와 관련하여 정부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상당수의 중소협력업체들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해 주고 세금 혜택 등을 마련하는 것보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 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왜냐하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의 경우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애요인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한국에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정책을 고려할 때 기존의 물질적인 지원정책 이외에 ‘정신적인’ 지원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중소기업 임직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와 정부가 개입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 고동수(2004), “경영품질을 위한 창의성·자율성에의 지원”, 2004 KMA 전략보고서 제9호 「경영품질」, 한국능률협회.
- 고동수(2004),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정책과제 개발연구」, 산업연구원.
- 김용열(2004), e-Kiet 산업경제정보, 제182호.
- 김용열(2005), e-Kiet 산업경제정보, 제244호.
- 산업자원부(2002), “기업의 윤리경영체제 강화방안”
- 산업자원부·산업정책연구원(2002), 「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 평가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산업자원부·산업정책연구원(2003), 「윤리경영 인덱스 개발 및 실태 평가」.
- 삼성경제연구소(2002), CEO information 제351호.
- 외교부(2002),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논의동향과 전망”
- 전경련(2003), 「윤리경영 종합 매트릭스의 이해」, IFO 2003-06.
- 전경련(2004), 「성공적인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7가지 조건」. CEO Report, CER-2004-13.
- 전경련 윤리경영팀(2004), 「윤리경영-이해와 실천」, FKI 미디어.
- 전경련(2005), “21세기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지향”, 월간 전경련 5월호.
- 한국능률협회(200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004 KMA 전략보고서 제3호.
- Calder, Fanny and Culverwell, Malaika(2005), 「Following up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ment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atham House.

- EU(2001), “Green Paper :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uly [COM(2001) 366 final].
- EU(200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 busines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July [COM (2002) 347 final].
- Fukuyama, Francis(1996), “Social Capital and Future of Asi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rganiz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Jun. 28. 1996, Seoul.
- Hoffman, W. M. and Frederick, R. E.(1995), Business Ethics: Readinga and Cases in Corporate Morality, McGraw-Hill.
- IMD(2003, 2004),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OECD(2001a), 「Corporate Responsibility : Private Initiatives and Public Goals」.
- OECD(2001b),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Partners for Progress」.
- WEF(2003, 200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www.iso.org
- www.ti.org
- www.ti.or.kr
- www.unglobalcompact.org

Issue Paper 2006-19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發行處：産業研究院(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涼里洞 206-9)

發行人：오 상 봉

登錄：1983年 7月 7日 第6-0001號/電話：3299-3114

印刷：2006年 3月 28日/發行：2006年 3月 30日

印刷處：邦 文 社

ISBN 89-5992-040-1 93320

購讀問議：홍보·편집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및 譯載를 禁함.
普及價 3,000원